

공지사항

定額還給·平均稅額證明書 對象物品選定

'85년부터 施行될 改定된 關稅還給制度에 대한 細部內容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니 相關업체의 참고가 있기를 바란다.

1. 개정 정액환급제도

가. 정액환급제도의 개정내용

- 현행제도
 - 작성방법: 기준소요량, 외화가격, 세율, 환율, 국산화비율 등을 조사하여 환급액을 산정 작성
 - 품목분류: 수출물품의 세부규격, 사용원재료의 가공도별로 분류
 - 적용방법: 정액환급율표 계기물품을 수출시 의무적으로 적용
 - 개정제도
 - 작성방법: 수출물품별 전년도 환급실적의 평균치를 환급액으로 결정 산정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CCCN 8 단위 까지만 분류
 - 적용방법: 업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개별 환급 가능함.
- * 근거조문: 환급특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나. 작성방법

전년도의 환급실적에 의하여 부재료(수출물품별 총환급액의 20% 이내의 원재료)에 대하여 평균환급액을 정액환급액으로 결정

다. 작성절차

- 1) 전년도 환급실적조사
 -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수출품목별(CCN 8 단위)로 전년도 1년간의 사용원재료 내역 및 원재료별 환급실적을 조사
- 2) 정액대상 물품의 선정
 - 가) 필요성
 -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모든 수출품이 CCCN 8 단위로만(품명, 규격불명) 구분되므로 동일 CCCN 8 단위내에는 사용원재료 및 기준소요량이 다른 2 개이상의 물품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 물품으로 만들 수 없는 품목이 있다. 따라서 CCCN 8 단위의 구분만으로는 정액화가 부적합한 물품과 정액환급율표 작성이 불가능한 물품이 많 있으므로 정액화가 가능한 물품을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나) 선정의 대상

- 업체가 요청하는 물품
- CCCN 8 단위로 물품의 통합이 가능한 물품
- 동일 CCCN에 2 개이상의 소요량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
- 소요량 고시상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원재료가 두종류 이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

다) 선정방법

- 업체(수출조합, 단체)의 건의
- 전산자료와 관세율표 및 기준소요량 고시에 의거 정액화 가능 물품 선정

3) 사용원재료 확인 및 원재료의 용도별 분류

가) 필요성

- 수출물품의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업체별 또는 가공단계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사되는 원재료의 내역은 모든 원재료가 CCCN 8 단위로만 나열된다.

- 이것을 용도별 구분없이 환급액이 많은 것부터 80%까지를 주재료로 나머지 20%를 부재료로 책정한다면 동일 용도의 원재료가 일부 물품은 주재료, 일부물품은 부재료에 동시에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 따라서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 원재료를 기준 소요량 고시의 원재료별로 분류하여야만 정액환급율표의 작성이 가능하다.

4) 원재료의 주·부재료 구분

기준소요량 고시상 원재료별 환급액이 총

공지사항

「예」
전산자료에 의한 환급실적

수출품	6101-0303 Men's Cotton Shirt	100 dz
원재료	5509-0301	10,000원
	5506-0400	5,000원
	5501-0200	3,000원
	5606-0200	300원
	5506-0100	800원
	9801-0100	6,000원
	합계	25,000원

업체별 실제사용 원재료

원단부분	A 업체 5509-0301 면직물	10,000원
	B 업체 5506-0400 면사	5,000원
	C 업체 5501-0200 원면	3,000원
재봉사	A 업체 5606-0202 P/C봉사	300원
	B 업체 5506-0100 면봉사	400원
	C 업체 5506-0100 면봉사	400원
단추	A 업체 9801-0102	6,000원
	B 업체 "	
	C 업체 "	
합계		25,000원

소요량 고시상의 원재료로 분류

원단	18,000원	주재료
재봉사	1,000원	부재료
단추	6,000원	주재료

환급액의 80%상당까지는 주재료, 기타는 부재료로 구분한다.

5) 정액환급율표의 작성

주재료: 원재료명만 나열 → 개별환급
· 기준소요량 고시상의 원재료명으로 기재

부재료: 1년간 수출량에 대한 평균 환급액을 정액환급액으로 결정

라. 적용방법

수출물품의 CCCN 8단위와 정액환급율표상의 CCCN 8단위만 일치하면 적용 가능함. (세부 규격 무시)

85년도 정액환급율표 작성 계획 일정표

84. 12. 31	수출업체(단체)에서 정액대상물품 요청
85. 1. 31	수출물품별 원재료 사용내역 및 환급액 조사 완료
85. 2. 1~3. 10	정액환급율표 작성
85. 3. 10~3. 31	환급기관 시달
85. 4. 1	개정 환급율표 시행

2. 평균세액 증명서 제도

(법상 규정된 것 이외에는 시행안임)

가. 의 의

- 환급이란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물품을 구성한 원재료 소요량 증명서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 수입(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가 동일(품명·규격)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재료의 품명·규격은 물품에 따라서는 대단히 복잡하므로 업체에서 환급서류에 이를 일일이 기록·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환급기관에서도 이를 전부 확인하여야하므로

-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재료를 CCCN 8단위별로만 구분하고 CCCN 8단위내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현재보다 좀더 간편하게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균세액증명서 제도이다.

「원재료 기재 예」

현행제도

평균세액
증명제도

9802 No. 5 golden brass dyed
slide fastener

0102 open end autolock slider 22"

9802 slider
fastener
of metal
0102

9802 No. 3 golden brass dyed
slide fastener

0102 pin-lock slider 9"

공지사항

나. 적용방법

- 평균 세액증명서 제도의 실제 적용방법은 CC-CN 8 단위가 같은 원재료가 여러번 수입(또는 국내에서 매입)되는 경우에 수입(또는 국내에서 매입)된 물량과 납부세액을 전부 합산하여 한장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평균세액증명서를 수입면장이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동일 원재료 확인면에서는, 소요량 증명서상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와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CCCN 8 단위에만 분류가 되면 환급이 가능토록 되고
- 환급액면에 있어서는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이 각기 다른 원재료라 하더라도 이들을 통합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들 원재료에는 똑같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시에 똑같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다. 발급 및 적용제한

1) 발급기간에 대한 제한

- 평균세액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월단위로 발급이 된다.
- 예를 들면, CCCN 8 단위가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회

수입이 되고, 2회 국내에서 매입이 된 경우에는 8회 수입·매입분을 전부 모아 한번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발급 순서에 대한 제한

- 평균세액증명서는 월순서대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 예를 들면, 85년 6월분을 발급받고난 뒤에는 7월, 8월, 9월분순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9월분을 발급받고난 후에는 7월분과 8월분은 발급이 되지 않는다.

3) 환급 등 신청에 대한 제한

-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입면장이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바로 사용하여 환급신청 등을 할수가 없으며, 반드시 평균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에 따라 환급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
-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해당월의 평균세액증명서상 기재된 물량을 전부 환급 등에 사용한 후에야 내수용 면장의 사용이 가능하며 내수용 면장 사용시 환급액은 해당월의 평균세액증명서상 평균환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발급대상에 대한 제한

- 평균세액증명서는 원재료를 CCCN 8 단위 별로 원재료를 통합하는 것인데, CCCN 8 단위별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을 정할

「평균세액증명서의 사용 예」

개별 수입면장(기납증)			
9802 0102	수입·매입량	납부세액	1개당 납부세액
No. 5 metal slider fastner	100개	200 원	2 원
No. 6 metal slider fastner	200개	600 원	3 원
No. 7 metal slider fastner	100개	400 원	4 원

평균세액증명서			
Metal slider fastner	400 개	1,200원	3 원

• 환급에 사용시에는 slider fastner 1개당 무조건 3원씩 계산

공지사항

- 수 없는 원재료(즉, 환급세액을 정할수 없
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 왜냐하면, 평균세액증명서란 환급의 간편화
를 위한 것인데 환급세액을 정할수 없게 되
면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전혀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CCCN 8 단위로 통합하는 경우 소요량을
정할 수 없는 원재료란, 주로 아래 예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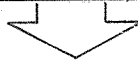
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물품을 만
들더라도 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데 CCCN 8 단위로 통합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규격이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가
되지 않는 원재료가 해당이 된다.

- 가) 소요량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
- 원자재의 품명·규격은 첫째 CCCN 8단위
범위내에서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 둘
째 단순히 CCCN 8 단위내에서 더 세분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예」

개별 수입면장(기납증)

3205 0200	농도	수입·매입량	납부세액	농도 100% 기준시
Formalan Black S-BL Acid	(100%)	100 kg	10만원	100 kg
Efdolan Orange GEN Acid	(200%)	50 kg	7만원	100 kg
Derma Cyanine G Acid	(300%)	50 kg	13만원	180 kg (380 kg)



평균세액증명서

3205 0200				1kg당 납부
Acid Dyes	×	200kg	30만원	← 세액 1,500원

소요량

옷 1벌 제조시 농도 100%의 Acid Dyes가 1kg 소요

- 단순한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한 계산 : 옷 200벌만 염색가능(×)
(1벌당 평균 1,500원)
- 개별 수입면장 등에 의한 계산 : 옷 380벌 염색 가능(○)
(1벌당 평균 789원)

「소요량 결정 표시가 없는 경우 예」 → CCCN 8단위 통합 가능

CCCN 8단위상	개별 수입면장(기납증)	품명·규격표기 내역구분
9802 0102 Slider fastner of metal	9802 0102 No. 5 golden brass dyed slide fastner open end autolock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N 8단위내 : brass slide fastner • 세분 : No. 5 golden dyed open end autolock 22" • 소요량 결정 : ×

「소요량 결정 표시가 있는 경우 예」 → CCCN 8단위 통합 곤란

CCCN 8단위상	개별 수입면장(기납증)	품명·규격표기 내역구분
3205 0200 Acid Dyes	Efdolan orang GEN Acid dyes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N 8단위내 : Acid Dyes • 세분 : Efdolan orange GEN • 소요량 결정 : 200%

공지사항

는 표시(동일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세계 소요량을 결정하는 표시 3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CCCN 8 단위로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해서는 환급시 소요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자재의 품명·규격내에「소요량을 결정하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CCCN 8 단위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격 표시가 기재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나) 소요량 결정 표시 유무의 판단방법

- 「소요량을 결정하는 표시」가 있느냐의 여부

는 단순히 원재료의 품명·규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수출물품을 구성한 원재료의 표기방법」과 「소요량 증명서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표기방법」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요량 증명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우 (소요량 증명상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소요량이 결정되도록 한 경우)
 - “예 1” : 조건이 1 가지인 경우(전술한 염료의 경우 참조)
 - “예 2” : 조건이 2 가지 이상인 경우

CCCN 8단위상	개별 수입면장(기납증) 상	품명·규격표기 내역구분				
7603 0100 알미늄판 200 kg (납부세액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미늄판 두께 0.3mm SL 18 폭 600mm • 알미늄판 두께 0.5mm MX 2 폭 1000mm 200kg 납부세액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N 8단위내 : 알미늄판 • 세부규격 : SL 18, MX 2 • 소요량 결정 : <table style="margin-left: 20px;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right: 20px;">두께</td> <td style="text-align: right;">mm</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20px;">폭</td> <td style="text-align: right;">mm</td> </tr> </table> 	두께	mm	폭	mm
두께	mm					
폭	mm					

소요량상 원자재의 소요량	- A 1 - Foil 1kg 당 • 두께 0.3mm 폭 600mm 이면 알미늄판 1.5kg 두께 0.5mm 폭 1000mm 이면 알미늄판 1kg
---------------	-----------------------------------------------------------------------------------------

↳ 환급시 계산방법소요량 결정요소 2개를 동시에 알기 전에는 환급액 계산 불능

②. 수출물품의 표기방법과 소요량 증명의 표기방법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경우

CCCN 8 단위상	개별수입면장(기납증)	품명·규격표기 내역구분
5509 0800 Dyed mixed cotton fabric,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 1,000yd) 납부세액 2,000 원	100% carded cotton yarn woven fabric dyed 83% wool 17% nylon 63" width 29×25, 1/12×1/12 9LBS /yd (.....1,000yd) 납부세액 2,000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단위내 : 100% carded cotton yarn woven fabric dyed 83% wool 17% nylon • 동일물품 : 63" width 29×25, • 소요량결정 : 1/12×1/12 9 LBS/yd

소요량상 원자재의 양 수출물품에 포함된 원자재의 양	수출물품에 포함된 원자재의 양×1.1배 5.5LBS 옷 1 벌당 Fabric 5LBS (포함)
---------------------------------	---------------------------------------------------------

↳ 환급시 계산방법소요량 결정 요소를 모르는 경우 환급액 계산 불능

• 옷 1 벌의 환급액 = $\frac{2,000 \text{ 원}}{1,000} \times \frac{5.5 \text{ LBS}}{9 \text{ LBS}} = 1.2 \text{ 원}$

공지사항

5) 국내거래시 전가세액에 의한 제한

- 평균세액증명제도는 실제 납부세액(환급세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월에 수입(또는 매입)된 것은 납부세액이 동일하게 계산이 되므로
- 평균세액증명서에 의거 세액을 계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매입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전가가 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 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향후 판매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6) CCCN 8 단위 분류내용에 의한 제약

- 평균세액증명서는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인데 그 세부규격이 복잡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환급에 사용하자는 것인데
- CCCN 8 단위에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재료라고 볼 수 없는 물품이 2 가지 이상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는 것이 평균세액증명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실제로 이를 통합했을때(예: 차량용 부분품 → 각종 부분품이 포함됨)에 실제 사용이 곤란할 것이다.

7) 환급기관 등에 대한 제약

-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등을 받는 물품은 개별 수출용 수입면장이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에 의해서는 기납증의 발급이나 환급을 받을 수가 없고
- 내수용 수입면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을 전부 사용한 후에야 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세액도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한 평균세액을 초과할 수가 없으므로
- 부득이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이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세관장에게만 환급 신청이나 기납증 발급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

8) 사용시기에 의한 제한

- 평균세액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월별로 일괄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만약 일부에 대하여 국내거래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를 완전히 구비한 후에 발급신청을 하든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는 발급을 받지 않아

야 된다. 이는 즉 동 서류를 사용한 환급신청 등을 늦게 하든지 일부에 대하여 환급신청 등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절차

- 평균세액 증명서는 상기의 수많은 제한이 있고 한번 평균세액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상기의 제한 원인들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해결 할 수가 없어 환급자체(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자재뿐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자재도 포함)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검토한 후에야 발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이러한 제한들은(특히 발급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 실제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만이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 중국적으로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에 불이익이 귀착되게 된다.

-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여부는 업체 책임하에 업체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으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라도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이 곤란해지거나 발급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업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동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관세청에서 지정하고 이들 물품 중에서 업체에서 발급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는바,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관세청장은 각 협회 등의 신청 및 이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세관의 업무량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제가 비교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고 평균세액증명서의 효과가 큰 물품을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 이 절차는 본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만 시행하는 절차임.

둘째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중에서 업체에서는 자신의 수입(또는 매입사항), 소요량증명(고시)사항, 수출(매출)시 기재방법 등에 의거 전술한 제한 등을 완벽히 검토하고 세관장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공지사항

세책 : 세관장은 지정신청서 제출된 서류에 의거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함.

네책 :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대상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시에 세관장이 정하는 시기부터 수입(또는 매입)한 분부터 수입면장·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둘째 내지 네책 절차는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물품은 수입면장 등을 바로 환급 등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므로 환급동시 모든 환급기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업체 및 물품의 지정사항을 모든 환급기관에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절차임.

다섯째 : 발급된 평균세액 증명서를 환급 및 기납증의 발급에 사용함.

- 이러한 제반절차에도 불구하고 중국적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당해 업체이며 중국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에 다른 이익·불이익도 결국 당해업체에 귀착된다는 점(한번 발급된 평균세액증명서를 취소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함)에서 업체에서 신청시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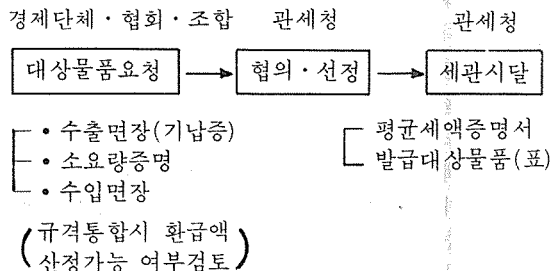
마.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 지정신청 및 발급 시기

- '85년도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지정 신청시기 및 증명서 발급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84. 11. ~ 12. 10	• 각 협회 등에서 발급물품 지정신청 및 협회(관세청)
'84. 12. 10~ 12. 31	• 발급물품 지정(관세청) • 각 세관에 시달
'85. 1. 1~ 1. 31	• 업체에서 세관장에게 발급물품 지정 신청
'85. 2. 1~ 2. 28	• 세관장이 지정여부 결정 • 지정시 관세청에 보고
'85. 3. 1~ 3. 31	• 관세청에서 업체별 발급물품 지정명부 작성 및 환급기관 시달
'85. 4. 1~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및 사용개시 • 환급기관에서는 명부에 의거 환급기관 및 개별수입면장·내수용 수입면장의 사용가능여부 등 확인

바. 발급 및 사용절차

1) 제 1 단계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선정 단계



2) 제 2 단계 : 업체에서 평세증 발급물품 지정신청 단계

- 업체 제출서류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지정신청서(갑·을)
 - 규격통합시 환급액 산정가능 여부검토 서류(수출입면장 사본)
- 지정신청 세관 : 업체주소지 세관

3) 제 3 단계 : 세관의 평세증 발급물품지정 단계

- 세관검토사항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가능 물품 여부 확인
 - 규격통합시 환급액 산정가능 여부 검토
- 세관 기재 및 통보사항(지정시)
 - 업체 및 관세청에 통지(보고) :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물품 지정통지, 보고
 - 대장에 기재 : 평균세액증명서 대상물품지정대장

4) 제 4 단계 : 관세청에서 평세증 발급업체 리스트 작성 시달 단계

5) 제 5 단계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단계

- 업체제출서류
 - 평균세액증명서 3부
 - 수입(매입)물품명세서
 - 평균세액증명서 추가 신청예정원재료 신고서
 - 평세증을 발급받을 수입면장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세관 확인사항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여부(시달된 평세증 발급업체 리스트)
 - 월별 순서에 맞는지 여부
- 발급시 수입면장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공지사항

「발급인」날인

- 세관 기재사항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장
- 업체별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장

6) 제 6 단계 : 평세증의 사용단계 ("예" 기납증 발급)

- 업체제출서류

- 평세증 — 수입면장, 기납증 대응
- 기타사항 — 일반 기납증 발급서류와 동일

- 평세증 발급업체의 경우 확인사항

- 기납증 발급 세관 여부 (평세증 발급 세관에 한정)
- 개별 수입면장(기납증)사용가능 여부
- 내수용 면장 사용가능 여부

- 기납증 발급

- 일반기납증 발급 방법과 동일

7) 제 7 단계 : 평세증 추가 발급단계

- 업체 제출서류

- 추가신청 예정원재료신고서
- 기타 일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서류

- 발급시 확인사항

- 추가신청서의 물품이 월별순서가 맞는지 여부
- 평균세액 계산방법이 맞는지

韓國과워 씨플라이 研究組合 設立

本會에서 設立 推進한 韓國과워 씨플라이 研究組合이 다음과 같이 設立 되었으므로 참고하기바란다.

다 음

1. 科學技術處 許可日 (番號) : 84. 11. 26 (第19號)
2. 理事長 : 普永電子 (株)
代表理事 宋 普 永

3. 組合員社

- 普永電子 (株)
- 韓榮電子 (株)
- 코리아데이터시스템 (株)
- (株)韓獨
- 韓國電裝 (株)
- 大韓엔지니어링
- 東洋트랜스工業 (株)
- 韓國컴퓨터電源

4. 設立 目的

과워 씨플라이 業界의 研究開發 投資 促進 등 技術開發 分野의 제반 業務를 協議 調整하고 會員 相互間 協同化 基盤을 구축하여 共同的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